

조선 후기 苑囿의 營繕체제와 과정에 관한 연구

전 영 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박사과정 졸업

A Study on the System and Process of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for the Royal Garden and Landscape in the Late Chosŏn Dynasty

Jeon, Young-Ok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royal garden and landscape were the most significant project in *Chosŏn* Dynasty. The kind of the royal garden and landscape were the rear garden of the palace, the groves of the royal shrine and orchard, etc. As the important project of the country, these constructions were controlled by the administrative system without division into the fields of engineering, building and landscap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particular,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royal garden and landscape in Hanyang from the 18th century to the late 19th century. This study is based on the analysis of historic documents and a survey of the relic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royal garden and landscape was composed of the government offices under Industry Board as a permanent organization - *Yŏngjosa*, *Santaeksa*, *Chunchŏnsa*, *Sŏngonggam*, *Changwonsŏ* - and Togam as a temporary organization. In addition to these organizations, there were Revenue Board, Ceremony Board, Military Board, which served as supporting organizations. The control of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royal

garden and landscape was held by decision makers, executors of works and management.

(2) The general process of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royal garden and landscape included *Sangji* and *Kyuhoeok*(site selection, site analysis, planning and design) as the first step; In case of buildings and facilities, according to former examples and drawings, the most of the planning and design was already fixed. In the case of landscape, those things aimed at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existing lie of the land. The works in the 2nd step; This process was divided into the construction of facilities and planting. In case of construction of facilities, those works were done by *Togam* and *Songonggam*. The high cost works were carried out through *Togam* and normal repairing works were completed by *Songonggam*. In case of planting, those works were carried out through *Chunchonsa* and the military. The management in the 3rd step; This process was done by two parts like the process of works. In case of facilities, management was done by the officers of *Pongshim* (the inspection of the palace and the royal shrine, etc.). In case of groves of newly - planted trees, this management was done by *Tongsanbyongam* and *Tongsanjik* who served cultivation and harvest of fruit trees as an expert.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조선시대 수도 한양에서는 국가 주도의 많은 조경활동이 있었다. 태조 4년(1395년)에는 白岳山 밑으로 경복궁을 조성하고, 그 동편에 종묘와 서편에 사직을 두었다. 태종 5년(1405년)에는 창덕궁이 이궁으로서 창건되었고, 성종 15년(1484년)에 창경궁이 수강궁터에 창건되었다. 이러한 조성과정에 따라 궁궐의 원유와 壇廟의 원유도 조성되었으며 도성 내외에 掌苑署 소속의 果園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소실되어 광해군 3년(1611년)에 창덕궁 중건이 이루어졌고, 광해군 8년(1616년)에는 창경궁을 중건하였다. 경복궁은 중건하지 못한 채 광해군 9년(1617년)에는 경덕궁이라는 이름으로 경희궁을 창건하였다. 이후 왕실사당도 계속해서 새롭게 조성되거나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神主를 모셔야 할 왕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

라 종묘도 증축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궁궐이나 왕실사당의 중건과 창건과정에서 원유의 조성과 주변의 수림보호가 이루어졌으며, 초기에 만들어진 과원들의 숫자도 늘어났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채로 270년간 폐허로 있던 경복궁은 고종 5년(1868년)에 중건되었다.

조선시대 도시사회상에 비추어 볼 때, 한양에서 이루어졌던 국가주도의 조경활동은 왕실과 관련된 원유의 조성과 유지관리였다. 원유의 유형으로는 궁궐의 원유, 壇廟의 원유, 과원을 들 수 있다. 궁궐과 壇廟의 옥외공간 조성 및 식목은 왕실의 정통성과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으며, 과원의 조성과 관리는 왕실 및 주요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果物의 수확을 담당한 것이었다.

조영과 관리의 주체는 여러 행정기구와 왕실을 비롯한 여러 관료들, 工役 및 관리의 담당자들로서 볼 수 있으며, 이들 행정기구와 인적구성이 주축이 되어 당시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집약하여 營繕 - 조영과 관리 - 과정을 수행하였다. 갑오경장(1894년) 이전까지는 대체로 『經國大

典』(1485년) 속의 규정에 따라 영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와서 새로이 설치된 濬川司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三軍營 -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역할 확대로 조선 후기의 영선체제가 새로 정비되었다.

이러한 영선체제를 통하여 만들어진 한양의 원유는 지방 고을들의 모범이 되어 조선시대 조경문화를 형성하였다. 실제 원유가 조성되었을 때에는, 그 형성배경으로서 간과되기 쉬운 영선을 위한 구체적 수단 - 제도 - 에 관한 연구가 조경유적을 바탕으로 한 조경양식이나 이용상황 등에 관한 연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원유의 영선체제와 그 수행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전통조경문화의 형성배경 중의 하나인 제도적 측면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원유의 조성과 관리를 제도에 의해 수행되던 영선체제의 한 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영선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주요 개념 정의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외침을 겪고 나서 영선체제가 새롭게 정비되는 영·정조대 - 즉 18세기부터 조선시대 제도 전반에 관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던 갑오경장(1894년) 이전까지가 해당된다.

내용적 범위로서는 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선 중에서 조경분야가 되겠다. 조경의 범위는 부지분석에서부터 정지작업, 화계, 지당의 축조 등과 같은 조경토목과 식재는 물론 건축물을 중심으로 옥외공간을 형성하는 요소들 - 담, 문, 계단, 바닥포장 등을 포함한다. 또한

나라가 주체가 된 조경의 대상에는 궁궐의 원유, 壇廟 - 왕실사당과 제사시설 - 의 원유, 果園, 자연수림과 하천 등이 되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주로 왕실과 관련된 원유를 중심으로 영선체제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개념의 정의

① 苑囿

조선시대에는 나라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 公의인 조경은 제도에 의해 수행되었다. 한양을 중심으로 본다면, 조선시대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이므로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위한 궁궐이나 왕실사당에 대한 조경이 있었고, 나라의 번창을 기원하는 여러 가지 제단 주위의 조경이 있었으며, 왕실이나 관청, 壇廟에서 필요로 하는 果物의 생산을 위한 果園에 대한 조경이 있었다. 그런데 왕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궁궐이나 단묘, 과원을 포괄한 조경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苑囿’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說文解字』를 살펴보면 ‘苑’자와 ‘囿’자는 동물들을 기를 수 있는 규모의 동산을 말하고 있으며, 담이 있는 경우에는 ‘苑’이라 하고 담이 없는 경우에는 ‘囿’라 하였다. 여기에 옛날에 ‘囿’라고 부르던 것을 한나라 때 와서 ‘苑’이라고 불렀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¹⁾. 이러한 사실로 보아 ‘苑’과 ‘囿’는 그 기능에 있어서 동물들을 기를 수 있는 곳으로 그 정도 규모의 동산을 운영한다는 것은 곧 나라의 것을 의미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시대적으로 볼 때 ‘囿’에서 시작된 것이 점차 담을 둘러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苑’이라 불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苑’과 ‘囿’를 합쳐 원유라 할 때는 동물들을 기를 수 있는 규모의 나라동산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苑囿의 시작은 주나라의 靈囿와 진

1) 『說文解字注』, “苑 所以養禽獸 周禮地官囿人注 囿今之苑 是古謂之囿 漢謂之苑也.” “囿 苑有垣也 高注淮南曰 有牆曰苑 無牆曰囿.”

나라 때 조성되었던 上林苑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후 청대까지 황실을 중심으로 한 조경을 ‘苑圍’라고 칭하였다²⁾.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원유라는 용어가 황실을 중심으로 한 조경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이기 시작한 구체적인 예는 조선시대에 와서 찾아 볼 수 있다³⁾. 조선시대 편찬된 지리지와 법전에서 원유라는 용어의 사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⁴⁾. 한양을 대상으로 한 지리지에서는 궁궐 조와 분리하여 원유 조를 두고 경복궁 후원, 창덕궁 후원, 경희궁 후원, 함춘원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어 궁궐을 중심으로 조성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법전에서 쓰였던 원유의 경우에는 주로 왕실에서 필요한 과물의 생산을 위한 果園을 의미하였고, 果園 뿐 아니라 果物을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궁궐후원과 단묘 주변 숲의 果木도 해당되었다⁵⁾. 그래서 본 논문에서 ‘苑圍’라는 용어의 사용은 왕실과 관련된 것으로 궁궐의 원유, 단묘의 원유, 과원에 한해서 쓰고자 한다.

② 營造와 營繕

조선시대에는 토목, 건축, 조경의 범위를 총 망라한 건설 행위에 관한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營造’, ‘營建’, ‘營繕’을 들 수 있다.

營造는 주로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토목,

건축, 조경의 건설행위의 생산적 측면을 의미하였다. 영조의 사용 예를 보면 병기, 形具, 築城, 교량, 도로, 건축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척도로 ‘營造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⁶⁾. 중국에서는 북송 대 李誠가 편찬한 건축기술서의 제목으로 ‘營造法式’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현대에 와서는 법률용어로서 ‘營造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또한 관공서와 같이 행정주체가 공용에 쓸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나 일반인에게 이용되는 시설을 의미하고 있다. 營建은 건설행위를 의미하나 주로 건축의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는 것으로 특히 도감이 설치 될 때 ‘營建都監’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營繕의 ‘營’에는 어떤 일을 피하거나 다스린다는 1차적인 뜻과 함께 집 같은 것을 짓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繕’에는 다스린다는 뜻과 함께 수선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營繕’이라 할 때에는 그 의미 속에 건물 등을 짓는 일 외에 이에 대한 유지관리까지를 포함한다. 營造의 의미와 營繕의 의미를 비교한다면, 영선에는 건설행위 중에서 점검을 통한 수선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영선’이라고 할 때에는 토목, 건축, 조경의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적 시설물에 대해 시행되는 건설 행

2) 彭一剛(1989), 『중국고대정원림의 분석』, 김중태 역, 서울: 문화재관리국: 32.

3) 실제로 언제부터 원유라는 용어가 왕실과 관련된 나라동산이라는 의미로 쓰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와 관련된 더 많은 문헌을 살펴 볼 필요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여러 기록에 의하여 조선시대부터는 원유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왕실과 관련된 나라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1 苑圍 條 “景福宮後苑, 昌德宮後苑,” 『東國輿地備考』 卷 1 苑圍 條 “景福宮後苑, 昌德宮後苑, 玉溜泉, 含春苑.” 『類苑叢寶』 卷 7 地道門 苑圍 條 “甘泉苑, 芳林苑, 上林苑, 長洲苑 等.” 지리지에서는 다른 지방과 구분하여 京都에 관한 사항 중 원유 조를 따로 두고 있다. 법전과 지리지 외에 17세기경에 백과사전 식으로 편찬된 『類苑叢寶』에도 원유 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국의 황실원유들을 소개하고 있다.

『經國大典』,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工曹 山澤司 掌山澤津梁苑圍 種植炭木石舟車筆墨水鐵漆器等事,” “掌苑署 掌苑圍花果,” 『掌苑署謄錄』 各色分定式 “果園色 一別提次知書員一人 庫直一名 生果色庫直兼 東山別監九人 內外各東山 及四處蓮池.” 법전을 보면 工曹의 山澤司와 掌苑署의 업무분장에 관한 설명 중 원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원서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장원서등록』을 보면 실제 장원서에서 관리하던 원유의 내용은 주로 東山(과원)과 蓮池가 해당되었다.

5) 조선시대 법전에서 의미하는 원유는 주로 과원을 관리하고 植木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원유의 개념과는 달리 과원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장원서의 雜織 중에서 愼禽(정 8품), 副愼禽(중 8품), 愼獸(정 9품), 副愼獸(중 9품)가 있었기 때문에 『經國大典』과 『大典會通』 吏典 雜織, 조선시대 원유에서도 약간의 동물사육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윤장섭(1975), “한국의 영조척도,” 『건축』 19(63): 9.

위와 이에 대한 유지관리로서 점검과 개보수공사의 시행까지 뜻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선'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 것은 법전으로서 공조의 역할과 이와 관련된 조문들을 기록하고 있는 工典의 항목 중 '영선'이라는 항목을 두고 그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축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를 다루고 있으므로 '영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③ 相地와 規畫 (규획)

조선시대 영선과정은 현대의 조경과정과 같이 그 단계별로 정확히 구분해 내기는 힘들다. 특히 기획과 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그 과정을 정확히 분리하기가 가장 어렵다. 신축일 경우에 부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주변환경을 살피며, 부지가 선택된 후 부지 분석과정을 거쳐, 공사규모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졌다. 특히 궁궐의 원유나 壇廟의 원유의 경우에는 설계의 기준이 經典과 前代先王 때 만들어진 前例에 따라 건축물의 경우는 間數의 증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옥외공간의 경우에도 규모의 증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⁷⁾, 공사규모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배치와 間數를 표현하는 도면의 작성이 곧 현대적 의미의 설계단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기획과 계획 및 설계 단계를 조선시대의 영선과정에서 본다면 주변환경 및 부지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경영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볼 수 있다. 태종 4년(1404년)에 향교동 동변을 살펴보고 이궁을 짓도록 하였는데, 이궁에 대한 부지선정과 분석을 위하여 터를 살펴보는 것에 대

하여 '相地'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⁸⁾. 『景慕宮儀軌』에서도 도감의 책임자였던 김화진이 그 당시 예조 참판으로서 경모궁 영선의 계획 및 설계를 위하여 대상지를 살피고 도면을 작성하였는데, 이때 '相址'라는 표현이 쓰였다⁹⁾. '址'는 터라는 뜻으로 '地'와 마찬가지로 의미로 쓰였다. 이는 동양의 대표적인 원림조영이론서인 『園治』에 나오는 '相地'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園治』에 나오는 '相地'의 개념은 원림을 꾸미고자 하는 부지를 현장에 나아가 관찰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는 부지분석(터 살피기)으로 풀이되며, 나아가 부지선정(터 고르기)이나 부지설계(터 다스리기)까지 포함하고 있다¹⁰⁾.

전반적인 경영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태종 5년(1405년)에 창덕궁을 조영할 때 부지 터를 돌아보고 경영계획을 세우는 것에 관하여 '經畫規模'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¹⁾. '畫'자에는 '그림'이라는 뜻과 함께 '피한다' 또는 '계책을 세운다'는 뜻이 들어 있다. 그림을 뜻할 때는 '화'로 읽지만 계책을 세운다는 뜻을 가졌을 때에는 '획'으로 읽는다. 태종 때 이궁조성을 위하여 '계획규모'하였다는 것은 부지 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공사에 대한 공사규모산정, 재정보, 물력마련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계획규모'가 술어로 쓰인 반면, 영선과정에서 비슷한 의미로서 명사로 쓰인 '規畫'이라는 용어가 있었다. 선조 38년(1605년) 종묘를 중건할 때 책임자들과 이에 관한 '규획'을 상의하도록 하였는데¹²⁾, 이러한 과정은 주로 도면작성을 통해 검토하였으므로 경영계획 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相地와 설계단계까지 포함한

7) 한계수(1991), "조선시대 營造기록의 고전적 가치와 건축사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19, 서울: 한양대학교: 245.

8) 『太宗實錄』 卷 8 4年 10月 甲戌條 "遂相地于鄉校洞東邊 命作離宮."

9) 『景慕宮儀軌』 卷 4 今制 改建時設都監儀 "景慕宮改建依定奪爲之 句管無人禮曹參判 金華鎮既已相址亦出圖形 敦匠之役宜付熟手 戶曹參判除授 仍差改建廳堂上."

10) 『원야』에 나타난 相地의 자세한 내용은 황기원(1995), "『園治·相地論』 연구(1)," 『환경논총』 33권을 참조.

11) 『太宗實錄』 卷 9 5年 2月 戊辰條 "觀營離宮 與星山君李稷 經畫規模."

12) 『宣祖實錄』 卷 185 38年 3月 丙戌條 "重建宗廟 次知堂上 則金岬朴弘老已爲差出 而無都提調 事體不重 今宜先出都提調 與戶禮兵工判書繕工宗廟提調等 相議規畫."

것을 의미하였다. 조선시대에 '규획'이라는 용어가 영선과정 외의 경우에 쓰였을 때에는 기획하거나 계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¹³⁾, 중국에서는 '規劃'이라는 용어가 아직도 쓰이고 있다.

3. 연구 방법

원유의 영선에 관한 연구는 법전을 비롯한 조경관련 행정기구에서 발간한 문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체제 연구와 더불어 실제 영선과정을 재현하여 영선체제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수행과정을 연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문헌분석을 하는 역사적 연구방법을 기본적으로 택하여, 영선과 관련된 행정체제와 행정기구, 인적구성과 영선과정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문헌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료 중 널리 알려진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經國大典』, 『大典會通』, 『東國輿地備考』, 『漢京識略』 외에 『植木節目』, 『景慕宮儀軌』, 『六典條例』 등이 중요한 사료로서 분석되었다¹⁴⁾.

『植木節目』(1782년)은 1782년에 경모궁 안팎의 식목과 관리 등 제반사항을 규정한 절목이다. 절목은 총 10조로서 식목의 관리와 감독 및 과일을 수확하는 규정, 식목 후 말라죽은 나무를 관리하는 규정 등을 세세히 적고 있다.

『景慕宮儀軌』(1783년)는 정조가 생부인 사도세자에게 尊號를 올리고 그 사당을 廟에서 富으로 격상한 내용, 祭享의식을 정비한 내용, 사도세자를 둘러싼 前시기의 여러 의식에 관한 내용을 정비해 놓은 책이다. 이 의례의 구성은 총 4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내용으로 권 1 「圖說」과 권 4 「今制」를 들 수 있다. 권 1

의 「圖說」에서는 경모궁의 구성 및 그 곳에서 제향에 참고할 만한 그림을 모아 놓았다. 권 4의 「今制」에서는 경모궁의 관리와 보수에 관한 규정(「奉審規制」, 「修改規式」)과 조경(「植木說」)에 관한 기록을 남겼고 그 밖에 운영방법과 여기에 소속된 관원과 노비, 담의 규모, 경모궁에 이르는 도로와 교량까지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六典條例』(1867년)는 각각의 관청 별로 규정을 모아 놓은 일종의 조례집이다. 1865년 12월부터 1866년 사이에 당시 각 행정기구에서 시행되고 있던 모든 조례와 『大典會通』(1865년)에서 빠진 시행규정 등을 모아 六典으로 분류하여 편성하였다.

4. 연구동향

본 연구의 주제인 조선 후기 원유의 영선체제와 수행과정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원유의 영선은 행정체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는데, 조경학 분야에서는 조경제도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에 들어 와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경학의 인접분야인 건축학 분야에서는 궁궐과 화성성역을 중심으로 한 營造¹⁵⁾에 관한 연구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원유의 영선과 관련된 연구사를 살펴보면 있어서 먼저 건축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영조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조경제도에 관한 연구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건축학계를 중심으로 한 營造나 造營과 관련된 연구로서 먼저 발표된 것은 이왕기(1979)의 “조선왕조 건축의 영조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주로 화성성역에 있어서 건축

13) 『成宗實錄』 卷 201 18年 3月 乙卯條, 同王 卷 283 24年 10月 丙戌條. 『宣祖實錄』 卷 55 27年 9月 壬寅條, 『肅宗實錄』 卷 7 4年 11月 庚戌條.

14) 고문헌에 관한 기초 서지사항은 다음을 참조함.

서울대학교 도서관(1993), 『규장각한국본도서체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경모궁의례』 해제,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1996, 영인본).

15) 건축학계에서는 건축생산에 중점을 두어 '영조'나 '조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사와 조직을 다루었다¹⁶⁾. 이후에 발표된 것으로는 김동욱이 1986년에 발표한 “인조조의 창경궁·창덕궁 조영”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조영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있다¹⁷⁾. 또한 김왕직(1987)의 “조선 후기 궁궐건축의 영조에 관한 연구”, 양윤식(1989)의 “화성영건에 관한 연구”는 의례를 기본 史料로 하였다¹⁸⁾. 한재수(1991)의 “조선시대 영조기록의 고전적 가치와 건축사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는 儀軌나 臚錄에 기록된 영조내용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 논문이다¹⁹⁾.

조선시대 조경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먼저 이유직(1992)의 “조선시대 조경제도의 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²⁰⁾. 이유직(1992)의 연구는 고려시대의 조경관제로부터 조선시대 법전에 나타난 조경관련 기구와 법조문을 검토하여 조경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밖에 다른 연구에 부수적으로 관리제도를 다룬 것으로 오승봉(1994)의 “조선시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중 자연환경보전의 대상, 목적, 방법, 관련 부서에 관한 내용과 장동수(1994)의 “한국 전통도시조경의 장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중 전통도시 숲의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가 있다²¹⁾. 이후 개별적인 행정기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

다²²⁾.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조경제도에 관한 연구를 제외한 營繕에 관한 연구는 주로 건물을 중심으로 한 궁궐조영과 화성성역을 대상으로 공사체제, 규모, 재료공급, 工匠 등 건축생산체제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래서 본 연구는 개별적인 행정기구에 관한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행정기구와 인적구성을 바탕으로 한 영선체제와 수행과정을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하였던 조경적 측면에서 밝혀 보고자 하였다.

II. 원유의 營繕체제

1. 營繕과 관련된 행정기구

한양을 중심으로 한 영선의 수행은 행정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의 행정체계는 왕 밑에 議政府가 있고 그 감독 하에 吏·戶·禮·兵·刑·工의 6조가 있어 행정업무를 각기 나누어 맡고 있었다. 『經國大典』(1485년)에 나타난 영선과 관련된 행정의 중심은 공조로서 도성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토목, 건축, 조경공사와 각종 수리 및 보수의 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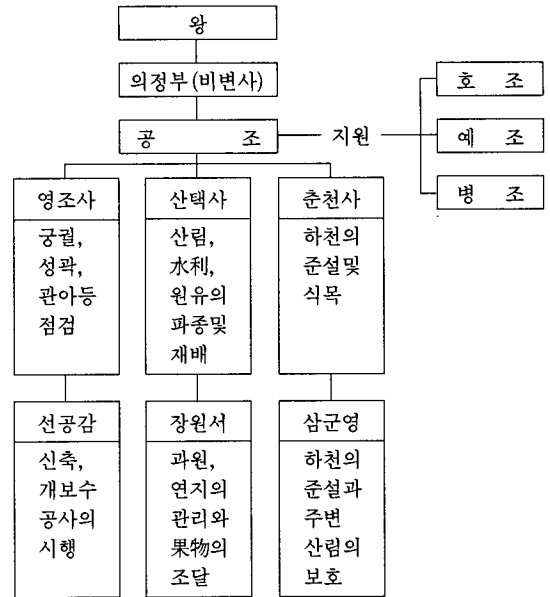
- 16) 이왕기(1979), “조선왕조 건축의 營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 17) 김동욱(1983), “조선시대 조영조직연구 1-3,” 『건축』 27권 112, 113, 115호.
 _____(1984), “조선후기 건축공사에 있어서의 목재공급 체제—수원공사를 중심으로,” 『건축』 117호.
 _____(1986), “인조조의 창경궁·창덕궁 조영,” 『문화재』 19.
 _____(1988), “한국건축 생산조직의 변천에 관한 연구,” 와세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1988), “조선시대 宗廟正殿 및 永寧殿의 건물규모의 변천,” 『문화재』 21.
 _____(1992), “17세기의 창덕궁 내전 조영,” 『임진왜란 이후의 조영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 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총서 2.
 _____(1996. 11), “조선정조조의 창덕궁 건물구성의 변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11호 통권 97호.
- 18) 김왕직(1987), “조선후기 궁궐건축의 營繕에 관한 연구 - 19세기 초 서궐, 창경궁, 창덕궁 영건도감의체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공학석사학위논문. 양윤식(1989), “화성영건에 관한 연구 - 화성성역의례에 나타난 건축생산체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이밖에 김룡국(1984), “경운궁의 영건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이 있다.
- 19) 한재수(1991. 2), “조선시대 영조기록의 고전적 가치와 건축사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19집, 서울: 한양대학교: 260-278.
- 20) 이유직(1992. 7), “조선시대 조경제도의 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권 2호.
- 21) 오승봉(1994), “조선시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55.
 장동수(1994), “한국 전통도시조경의 장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86-233.
- 22) 전영욱, 양병이(1997. 1), “조선시대 조경행정기구로서 장원서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4권 4호.
 _____(1997. 7), “조선시대 조경공사의 제도적 측면에 관한 연구 - 선공감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5권 2호.

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체계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변화하여 의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備邊司의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설치된 군사기구인 三軍營 -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이 영선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일어난 행정체계의 변화는 『大典會通』(1865년)과 『六典條例』(1867년)에도 반영되었으나, 6조의 업무분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공조의 하위기구는 창설 또는 폐지를 통한 변화가 있었다. 공조의 屬司로서 도성 내 개천의 막힌 곳을 뚫고 준설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영조 36년(1760년)에 濬川司가 설치되었다. 繕工監과 掌苑署의 경우에는 관직의 증감만 있고 기능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修城禁火司와 典涓司는 폐지되었다. 수성금화사의 기능인 궁성과 도성의 수축은 삼군영이 나누어 맡았으며, 禁火는 한성부가 주관하였다²³⁾. 전연사의 기능인 궁궐 내 청소는 선공감으로 이전되었다²⁴⁾.

이중에서 원유의 영선과 직접 관련된 행정기구는 공조를 중심으로 한 행정기구와 지원 부서로서 호조, 예조, 병조가 관련되었다.

공사를 수행하던 행정기구로는 영선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공사의 규모가 클 때 임시로 설치되는 都監과 공조소속의 營造司, 繕工監이 있었다. 도감이란 유사시 임시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權設職(임시직제)의 하나로서 법전에 규정된 항구적 직제와는 별도로 두는 관직이었다. 도감이 설치되는 경우는 왕의 즉위·성혼, 왕세자·세손의 성혼·책봉, 장례, 御眞(畫像) 모사, 외국사신의 영접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행사 외에 궁궐을 비롯하



〈그림1〉 공조를 중심으로 한 영선·관련 행정체계²⁵⁾

여 廟·殿·宮 등에 관한 규모가 큰 營建·增建·改修 등의 공사가 있을 때에도 도감이 설치되었다. 해당공사의 격에 따라 도감대신에 都廳, 營建廳, 修繕廳이 설치되기도 하였으나 모두 임시직제로서 도감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²⁶⁾. 영조사와 선공감은 도감과는 달리 항구적인 행정기구로서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영조사는 궁실, 성곽, 관아건물, 기타가옥, 토목공사, 가축·모직의 공급 등의 일을 관장하는 행정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실제 공사의 수행은 영조사의 하위기구인 선공감²⁷⁾에게 일임하여 주로 궁실의 점검과 가축·모직의 공급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그림1〉 참조)²⁸⁾.

원유의 관리는 山澤司와 그 밑에 소속된 掌苑署가 맡고 있었다. 산택사는 산림, 水利, 나

23) 『增補文獻備考』, 職官考 修城禁火司.

24) 『漢京識略』 關外各司 典涓司.

25) 도감의 경우 임시직제였기 때문에 공조를 중심으로 한 행정체계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26) 양윤식(1989), 前掲論文: 36.

27) 선공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영욱, 양병이(1997.7), 前掲論文을 참조할 것.

28) 『六典條例』 工典 營造司 土木工役에서는 그 업무의 내용을 모두 繕工監조를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양의 성곽과 문의 경우에도 조선 후기에 와서는 三軍營에서 나누어 맡아 봄·가을로 순찰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영조사의 주된 기능은 가축, 모직 등의 공급만을 맡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六典條例』 工典 營造司 城池 “三營門分管而 本曹只爲春秋巡審.”)

루터의 관리, 원유에 대한 식물의 파종과 재배를 맡고 있었으며, 그밖에 숲과 장작, 석재, 배와 수레, 筆墨, 무쇠로 만든 가공품, 칠기 등을 공급하는 행정기구로서 설치되었다. 그러나 원유의 식물파종과 재배에 관한 역할은 하위기구인 장원서에 일임하였다(〈그림1〉 참조)²⁹⁾. 장원서에서 이루어지던 원유의 관리는 주로 東山이라고 칭하던 果園과 蓮池에서 果物과 연밥을 수확하고 이를 왕실과 필요한 관청에 공급하는 일이었다³⁰⁾.

영조사와 선공감, 산택사와 장원서가 행정체계상 상하의 위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대와 같이 모든 업무에 관하여 상위기구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 체제가 아니라, 하위기구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왕이나 당상관과 직접 의논하기도 하며 자율적인 처리를 할 수 있었다. 실제 선공감과 장원서와 같은 屬衙門들의 활동은 대부분 자율적으로 처리되었고 중대사, 돌발사에 한하여 직접 해당되는 각 曹(선공감과 장원서의 경우에는 공조)나 提調의 지시나 협의를 구하여 처리하였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일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되는 曹도 거치지 않고 왕에게 고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³¹⁾. 특히 선공감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도성이나 궁궐과 관련된 중요도가 높은 것이었기 때문에 영조사의 감독을 받기보다는 관리구역을 정하여 거쳐 자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³²⁾.

산림과 하천의 보호와 관련되어 식목 및 수림의 보호를 주로 시행하던 행정기구로는 瀋川司가 있었다. 준천사는 영조 36년(1760년)에 개천을 浚濬하고 四山을 수호하기 위하여 창설된 행정기구였다. 준천사의 조직은 都提調 3명에 삼정승(정 1품)이 겸직하였고, 그 밖의 관리들은 주로 삼군영에서 나누어 맡았으며, 하천 준설의 실무는 삼군영의 四山參軍에게 분담시켰다(〈그림1〉 참조)³³⁾. 도성 내 하천의 준설은 바닥에 쌓여 있는 토사 등을 파내고 제방을 수축하는 일이었으나, 하천 주변의 불법적인 개간에 따른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주변 산림의 보호도 함께 이루어졌고, 결국 훼손된 지역에 대대적인 植木을 실시하는 것도 준천사의 주요 기능이 되었다. 원래 도성 내 四山의 수림보호는 병조에서 정한 四山監役官과 山直이 맡고 있었으나³⁴⁾, 영조 30년(1754년)에 四山監役官을 四山參軍으로 이름을 바꾸고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충유청이 그 구역을 나누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준천사의 창설과 더불어 업무를 일원화하였다³⁵⁾. 준천사에서 실시하던 식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매년 춘추 및 장마 때에는 버드나무와 雜木을 제방 및 빈터에 이식하여 이를 배양하고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하천을 준설한 뒤에는 동문 밖에 植木所³⁶⁾를 설치하였다³⁷⁾. 준천사는 이러한 식목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植木直

29) 『육전조례』가 쓰여진 1867년에는 산림과 수리, 나루터의 일은 均役廳과 三軍營이 맡았고, 배와 수레의 공급은 舟橋司와 三軍營의 기능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영선과정에서 중요한 원유에 대한 식물의 파종과 재배는 하위기구인 장원서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조선 후기에 산택사의 기능은 숲과 장작, 筆墨, 水鐵, 칠기 등을 공급하는 일에 국한되어 있었다(『六典條例』 工典 山澤司 “山澤津梁 今屬均役廳 及三營門.” “舟車 今屬舟橋司 及三營門.” “苑囿種植 詳掌苑署.”).

30) 장원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영욱, 양병이(1997.1), 前掲論文을 참조할 것.

31) 한충희(1983), “조선초기 六曹屬衙門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한국학 논집』 10: 7-10.

32)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거의 선공감이 직접 공사에 관하여 왕과 의논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

33) 『六典條例』 工典 瀋川司.

34) 『經國大典』 工典 栽植.

35) 한우근 외 4인(1995), 『역주 경국대전-주석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60-761.

차문섭(1995), 『조선시대군제연구』, 서울: 단대출판부: 370.

36) 도성 水口門안에 地氣를 기르기 위하여 假山을 만들었는데, 영조 36년(1760년)에 버드나무를 양쪽 언덕에 심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植木所라 불렀다고 한다(『東國輿地備考』 漢城府 山川). 이러한 예가 동문 밖에도 있어 식목소라 불렀던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37) 『六典條例』 工典 瀋川司 總例 “每年春秋 及潦雨時 浦楊及柳木雜木易生者 移種於柵堤 及閒隙處 以爲長養維持.” 『六典條例』 工典 瀋川司 總例 “東門外 植木所 瀋川後編結 禁御兩營舉行 物力本司擔當.”

을 따로 1명 두고 있었다³⁸⁾. 결국 준천사의 설치 이후에는 四山參軍이 맡은 구역을 점검할 때 모든 하천과 도랑도 순찰하여야 했고, 삼군영의 정기적인 하천의 점검에도 四山이 포함되어 실제 하천의 보호는 산림의 보호와 같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원유의 영선은 공조 소속의 행정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경비 조달을 위한 호조는 영선의 감독과 공사수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밖에 예전적 절차와 도면을 그리기 위한 畫員의 파견에 예조가 관여하였으며, 노동력 제공을 위한 병조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체 영선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2. 營繕과 관련된 인적구성

원유의 영선과 관련된 인적 구성은 의사결정자, 공역의 수행자, 관리의 수행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사결정자로는 왕과 堂上官³⁹⁾, 監役官, 計士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 영선은 국가적 대사일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주로 당상관 이상의 관리가 모여 왕과 함께 정무를 의논하는 視事(政務에 관한 회의)와 經筵(講學을 위주로 한 회의) 등을 통하여 왕은 영선과정 전반에 걸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였다⁴⁰⁾. 그런데 왕과 관료들의 의논과정만으로 처리하기 힘든 중요한 영선일 경우 도감을 비롯한 임시기구를 설치하고 해당되는 행정기구의 관료들로 하여금 도감의 책임자직을 겸임하게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계획과 설계는 물론 시공에 대한 감독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역관이란 선공감 소속의 종 9품의 관직으로서 영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감독하는 일을 맡은 관리를 말한다⁴¹⁾. 감역관의 역할은 토목, 건축, 조경을 총 망라한 여러 가지 공사를 감독하는 것이었는데, 공역에 동원된 많은 군사와 民役을 지휘하여야 했으며, 호조의 많은 견제를 받으면서 필요한 材木과 물자를 관리하고, 특히 기술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능력과 식견을 가지고 주어진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하였다. 계사는 호조에 속한 종 8품의 관직으로서 회계 및 지출될 경비내역을 산출해 내는 전문인이었다⁴²⁾. 개보수공사 때 먼저 계사를 통하여 필요한 경비와 공사물량을 책정하고 나서 이에 따라 공사가 시행되었으므로, 호조에서 파견된 계사는 실제 공사의 규모를 한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공역을 수행하는 사람들로써 工匠, 軍士, 畫員이 동원되었다. 공장들은 건축물 및 옥외공간의 조성을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조경공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식재에 관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공장은 없었다. 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선공감에서는 營繕軍丁色을 두고 잡역부를 관리하였으며, 동원이 쉬운 군사들이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 와서는 삼군영의 군사들이 궁궐의 담이나 壇廟의 영선을 직접 맡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준천사의 감독 하에 四山の 보호와 하천 변의 식목도 맡고 있어 조선 후기 원유의 영선과정에서 삼군영의 비중이 커졌다. 화원들은 영선에 필요한 물품에 그림을 그리는 모든 일을 맡고 있었는데, 계사와 함께 파견되어 공사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圖形과 圖說⁴³⁾을

38) 『六典條例』 工典 濬川司 徒隸 “植木直 一名.”

39) 조선시대의 관품 중에서 각각 관의 준비를 표시하기 위하여 堂上和 堂下로 나누었는데, 당상관은 정 3품 上階 이상을 지칭하였다. 이들의 구분은 국정의 정책결정에 참가할 수 있으나, 없느냐 하는 기능적인 분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김운태(1995), 『조선왕조 정치·행정사』, 서울: 박영사: 325).

40) 『太宗實錄』 卷 9 5年 2月 戊辰條, 同王 卷 10 5年 10月 丁亥條.

『燕山君日記』 卷 54 10年 7月 戊戌條, 辛丑條, 同王 卷 55 10年 8月 乙酉條.

『宣祖實錄』 卷 185 38年 3月 丙戌條.

『英祖實錄』 卷 8 1年 10月 癸未條.

41) 『續大典』 吏典 京官職 繕工監.

42)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戶曹.

그리는 일을 맡고 있었으며, 공장과 같은 기술자로 간주되었다⁴⁴⁾.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인적구성으로는 奉審의 주관자와 수목의 관리자로 나누어진다. 奉審이란 왕실의 祠堂, 山陵, 壇, 胎室, 碑石, 史庫 등의 이상유무를 살피고 점검하는 일을 말한다⁴⁵⁾. 봉심절차를 통하여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조경시설물 - 바다포장이나 담, 계단 등을 점검하였는데 이를 수행하던 관리는 해당관사의 提調와 예조의 당상관, 낭관으로 구성되며, 봉심 후 개수가 필요할 때에는 호조와 공조의 관리 및 선공감의 감역관까지 참여하게 된다. 수목의 관리자는 군인으로서 수목을 보호하던 四山監役官, 山直 등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四山監役官은 四山參軍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군인들이 맡았던 수목관리 직책은 순찰을 통한 보호에 치중하였는데 반해, 실제 수목의 재배와 과일수확만을 전담하던 전문기술직으로서 東山別監과 東山直이 있었다.

東山別監은 장원서에 소속되어 있던 직책으로서 모두 20명을 두었다. 이들을 특별히 궐내 잡역에 동원되는 노비계층을 말하는 별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로 궁궐의 원유와 궁궐 가까이 위치했던 果園들에 소속되어 수목관리와 禽獸의 飼畜하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산별감은 기술이나 기예가 뛰어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잡직에 오를 수 있었다. 화초의 재배를 맡은 慎花(종 6품), 果物에 관계되는 일을 맡은 慎果(종 7품), 원

유 내 조류에 관계되는 일을 맡은 慎禽(정 8품)과 副慎禽(종 8품), 원유 내 짐승을 기르는 일을 맡은 慎獸(정 9품)와 副慎獸(종 9품)에 오를 수 있었다⁴⁶⁾.

동산별감이 장원서 소속으로 궁궐의 원유와 그 가까이 있던 果園을 관리했다면 그밖에 지역의 수목관리는 東山直⁴⁷⁾이라는 직책이 담당하였다. 경모궁의 예를 보면 식목에 대한 감독, 수목의 보호, 과일수확을 위하여 동산직을 두었으며, 장원서에도 外東山直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⁴⁸⁾, 동산직은 궁궐 밖의 수목을 관리해야 하던 곳과 경기도 일대에 흩어져 있던 外苑(경기도 일대의 果園)에 배치되어 과목과 화초의 재배를 맡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동산직의 지위는 동산별감과 같이 雜織을 받을 수 있는 직책은 아니었다. 그런데 『景慕宮儀軌』 卷 4 「今制」에서는 경모궁에 관련된 직책을 품계가 주어지는 '本宮官員'과 그렇지 못한 '率屬奴婢'로 나누어 기록하면서, 동산직을 '솔속노비'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노비로 분류된 직책으로는 동산직 외에 守僕(8명), 書員(1명), 庫直(1명), 房直(1명), 案山直(1명), 蓮直(1명), 使令(4명), 守直軍(12명)이 있으며, 이외에 따로 노비 200명이 속해 있었다⁴⁹⁾. 이들 중 수복은 廟·社·陵·園 등의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았던 직원으로 승정원에서 시험을 통하여 선발하였고, 서원, 고직, 사령 등은 품계가 주어지지 않던 衙前들로서 각기 실무를 맡고 있었으며, 下級士族이나 양민들이 주로 맡았다⁵⁰⁾. 그러나 이들 직책이 노비로 분

43) 조선시대에는 界畵기법으로 그려진 도면으로 볼 수 있는 그림들을 『조선왕조실록』이나 『의궤』의 기록에서는 '圖形'이나 '圖說'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도면에 해당하는 그림을 영선의 전 과정에 걸쳐 이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間數를 중심으로 그려 설계도면으로서 시공에 쓰였던 그림을 도형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도형에 정확한 尺量과 間數 및 기둥의 수에 관한 설명을 첨부한 것을 특별히 도설이라 하였다.

44) 영선과 관련된 의궤를 보면 화원들의 이름이 다른 工匠들과 마찬가지로 '工匠秩'에 기록되어 있다.

45) 한우근 외 4인(1995), 前揭書: 422.

46) 『大典會通』 吏典 雜織 掌苑署.

이유직(1992.7), 前揭論文: 82.

47) 법제상의 명칭으로 볼 수 있는 동산직은 동산의 꽃이나 나무 등을 가꾸는 전문인을 지칭하는 '동산바치'의 기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48) 『大典條例』 工典 掌苑署 果園色 "可種果木花草 使外東山直採納." 『景慕宮儀軌』 卷 4 今制 植木說 "宮內舊在花果雜木一千七十六株(甲申丙申以後所種) 丁酉三月定東山直(朴鳳尙)使之守護."

49) 『景慕宮儀軌』 卷 4 今制 率屬奴婢.

〈표1〉 경모궁 소속 衛前들과 동산직의 급료 비교

직명	주요직책	월 급료	봄·가을 지급 받는 급료	비고
守僕	제사에 관한 일	쌀 12두 포 2필	포 2필	
使令	심부름	쌀 9두 포 2필	포 1필	
書員	잡무, 使令, 기록, 회계 등 말단 사무	쌀 6두 포 2필		
庫直	창고지기	쌀 6두 포 2필		
東山直	식목 및 수목의 관리, 과일수확	쌀 6두 포 1필	포 1필	
房直	방지기	포 2필		
案山直	안산의 수목보호	어영청군사 급료 외 3두		군인
蓮直	蓮池의 보호	어영청군사 급료 외 3두		군인

*『경모궁의례』에서는 급료 중 곡식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육전조예』 궁전 선공감 用下에서 원역의 급료를 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도 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출처: 『景慕宮儀軌』 卷 4 守制 率屬奴婢)

류된 이유는 원래 職役의 하나였으며, 품계가 주어지지 않는 하급직원들을 품계가 주어지는 관리들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산직이 받았던 급료를 다른 아전들과 비교해 보면 서원이나 고직의 급료와 비슷하게 받고 있어 이들 아전들과 비슷한 지위였음을 알 수 있다(〈표1〉 참조).

따라서 장원서의 동산별감이 궁궐의 원유와 궁궐 가까이 위치한 과원을 관리하던 기술직으로 잡직에 오를 수 있는 지위를 가졌던 반면, 동산직은 기타 수목관리를 해야 하는 곳과 경기도 일대에 위치하였던 外苑에 파견되었던 기술직으로 잡직에는 오를 수는 없었지만 아전들과 비슷한 지위를 가진 기술자였던 것을 알 수 있다.

Ⅲ. 원유의 營繕과정

1. 일반적인 營繕과정

조선시대 원유의 영선과정은 현대와 같이 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 관리의 단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영선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먼저 신축일 경우에는 부지선정과 기본구상에 관하여 왕을 중심으로 당상관 이상의 관료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다. 부지선정과 공사의 규모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주로 왕의 명령을 하달하는 방식과 해당되는 관료들이 그들의 생각을 들어 왕의 허락을 받아 내는 두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변지세를 그린 도면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궁궐의 원유, 壇廟의 원유, 도성내외의 연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풍수지리설이나 실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부지선정과 기본구상을 하였다⁵¹⁾. 신축일 경우 부지가 선정된 후에, 개보수의 경우에는 바로 부지분석(상지)을 하고 이에 따른 경영계획(규획)을 세웠다. 상지란 대상부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로서 좁은 의미에서는 부지분석이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부지선정과 부지설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²⁾. 규획은 주로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계획 및 설계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 때의 기준은 前例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세세한 부분에 관한 결정은 공사의 규모와 수행능력에 따라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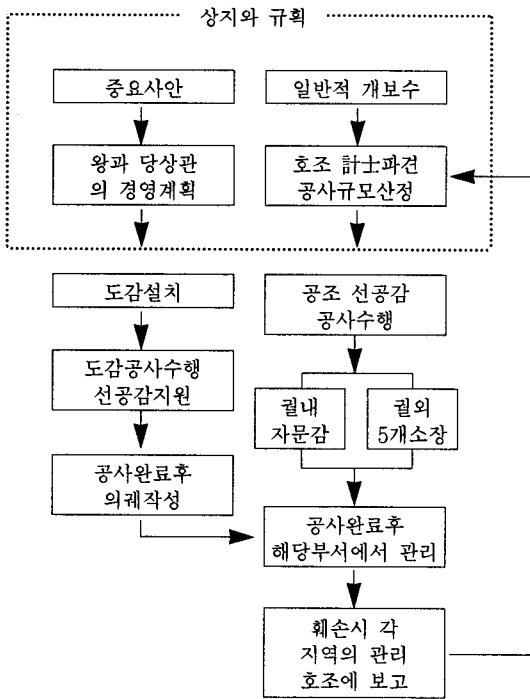
조선시대 일반적인 영선과정(〈그림2〉 참조)은 상지와 규획과정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때 궁궐의 영선과 같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임시직제인 도감이 설치되어 수행하였으며, 그밖에 일반적인 개보수

50) 이병수 외 5인(1972), 『한국학백과사전』 권 1, 서울: 을유문화사: 293.

한우근 외 4인(1995), 前掲書: 181. 『大典會通』 禮典 奉審.

51) 창경궁 홍화문밖에 위치하였던 함춘원의 조성은 지세의 보완이라는 풍수지리설과 궁궐에 대한 시각적 차폐라는 기준을 가지고 부지선정과 기본구상을 하였으며, 도성내외에 조성된 연지 중 남지와 서지의 경우 한양의 水口門과 坤方이 허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 위치가 결정 되었다.

52) 황기원(1995), 前掲論文: 218-220.



<그림2> 營繕의 일반적 수행과정

공사로 판단되면 공조의 선공감을 중심으로 공사가 수행되었다.

사안이 중대하여 도감이 설치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계획과 설계를 보완하였다. 이 단계부터는 도감의 책임자와 경비지출을 맡게 되는 호조를 비롯한 해당 관료들이 수시로 왕과 함께 사안에 대한 경영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영선의 수행과정을 계속 점검하였다. 공사가 시작되면 선공감에서는 監役官의 파견과 別工作설치를 통하여 이를 지원하였으며, 많은 工匠과 군사들이 동원되었다. 선공감에서 감역관을 파견했던 것은 선공감의 관리가 직접 도감 내로 차출되어 공사감독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었고, 별공작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만들어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도감이 설치되었던 중요공사의 경우에는 공

사가 끝난 후 도감을 철폐하고 의궤도감을 다시 설치하였는데, 이 때 작성된 의궤는 관리와 후대에 있을 영선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었다. 의궤에는 관리의 명단과 圖形, 圖說을 비롯하여 공사날짜를 택하는 것에서부터 공사과정의 전모와 동원되었던 工匠의 명단까지 기록으로 남겼다.

도감이 설치될 정도가 아닌 규모가 작은 공사나 일반적인 개보수가 있을 때에는 선공감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 때에는 해당구역에 따라 선공감이 주로 맡아서 수행하게 되는데, 신축 때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圖形을 기준으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을 위주로 하게 되고 설계단계는 생략되기도 하였다.

개보수 공사의 경우는 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훼손된 곳에 대한 개보수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선공감의 역할과 공사의 범위는 현대적 의미의 시공과 관리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다. 선공감에서는 그 관리구역을 창덕궁을 중심으로 궐내와 궐외로 나누고 궐내의 궁궐후원 등에 대해서는 금호문 밖에 있던 紫門監에서 맡고, 궐외지역은 5개의 所掌으로 나누어 上林苑, 含春苑 등을 맡고 있었다⁵³⁾. 이 중에서 궁궐 담의 수축은 삼군영 -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에서 맡고 있었다.

5개의 所掌에는 각각 監役이 있어 맡은 지역에 개보수 하여야 할 곳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감역이 호조에 보고하고, 호조에서는 計士를 정하여 현장을 살핀 후 공사에 필요한 경비와 材木의 양을 책정하는데, 이때 計士와 함께 畫員이 파견되어 圖形을 작성하였다. 필요한 경비와 재료가 마련되면 선공감에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규모가 약간 크면 감역이 감독하고 아주 크면 호조의 郎官이 파견되어 같이 감독하게 된다. 만약 단순한 개보수가 아니라 新建 또는 重建과 같은 큰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 소장의 감역이 각자 소장의 員

53) 『六典條例』 工典 繕工監 附 紫門監 “掌闕內營繕木器皿工作之事 及鐵炭眞雜長楸木水青木紅假園之用.”
『六典條例』 工典 繕工監 附 營繕 “掌闕外諸處五所掌營役 及大小橋梁陵園墓修改之事.”

役⁵⁴)을 인솔하여 힘을 합하여 거행하도록 하였다⁵⁵). 그런데 창덕궁 내의 경우에는 자문감의 점검과 더불어 왕명에 따라 호조가 직접 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⁵⁶).

도감이 설치되었던 경우나 일반적 개보수공사가 시행된 후의 관리는 구분 없이 그 대상별로 이루어졌다. 궁궐원유의 경우는 개보수 때 시공 담당 부서인 선공감 소속의 자문감과 5개 소장이 해당구역별로 점검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奉審이라는 절차를 통해 관리하였다. 점검과정에서 보수나 개조해야 할 곳이 발견되면 예조에서 왕에게 보고한 후, 개수할 날짜를 택하고, 이에 따라 해당되는 행정기구의 관료와 선공감의 감역관이 현장을 살핀 후 거행하도록 하여⁵⁷), 영선과정 전체를 다시 밟게 된다(<그림2> 참조). 왕실의 果園이나 한양 내 4곳 蓮池는 장원서에서 과일의 생산을 위한 관리를 하였으며, 수목의 관리는 특별히 동산직을 두어 관리하였다.

2. 營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1) 相地와 規畫 (규획)

상지와 규획과정의 구체적 절차는 법전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공사를 수행하기 전 왕과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상지와 규획과정은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검토해 볼 수 있다. 먼저 해당관료들이 대상부지를 자세히 살핀 후, 공사에 관해 잘 아는 관리와

경비를 산정할 計士를 畫員과 함께 파견하여 대강의 도형을 작성하였다(상지). 다음 왕에게 건의할 가장 적절한 규모의 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도형으로 그려 검토한 후, 한가지 안을 선정하여 다시 자세하게 도형으로 그려 왕과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안을 결정하였다(규획).

선조 38년(1605년) 서쪽 담밖에 別殿을 세우는 일에 관하여 해당관료들이 먼저 그 터를 살펴보고 공역의 규모를 산정해 보니 그力量이 많다고 판단되어, 여러 대안에 관하여 그림을 그려 살펴 본 뒤, 內班院을 철거하고 그곳에다 동쪽으로 향하여 정전을 앉히고 長廊을 두른 다음 절반쯤은 다른 용도로 쓰며 差備門을 개천 위 다리가로 이설하고 못 서쪽에 담을 쌓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도형으로 그려 왕과 의논하였다⁵⁸). 선조 39년(1606년)의 경복궁 중건 때에는 궁궐영조도감의 당상관, 낭청이 掖庭署의 일을 잘 아는 사람, 화원, 목수를 데리고 가서 間架를 중심으로 도형을 그리고 건조해야 할 間架를 의논하여 정해서 필요한 재목과 공사의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도형을 그린 뒤에도 수정할 때가 있게 되면 계속하여 의논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⁹). 광해군 9년(1617년) 인경궁을 만들 때에는 都提調 이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외정전, 視事殿, 침전, 별당, 夜對廳 등의 구성에 관해 상세히 논의한 후 도면이 그려졌다⁶⁰). 광해군 10년(1618년)에는 선공감 관사 이전공사가 있을 때 선공감관사의 間數를 상세히 그림

54) 각 관청에 있어서 사무직원 및 役夫의 총칭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吏胥들을 말한다.

55) 『六典條例』工典 繕工監 附 營繕 五所掌 “各處有處則該掌監役報戶曹 自戶曹定計士看審後物力磨鍊 役處稍大則監役檢 浩大則戶曹郎廳同爲監董 如值新建重建等大役 則諸所掌監役各率本掌員役合力舉行”.

56) 『六典條例』工典 營造司 “闕內修理 因傳教及戶曹文移 堂上郎廳 各一員 領率各色工匠 進去 (今戶曹專管)”.

57) 『大典會通』禮典 奉審. 『六典條例』戶典 前例房 奉審修改, 別例房 奉審修改.

58) 『宣祖實錄』卷 193 38年 11月 甲午條 “西牆外別殿造成 以便行禮事 允下 故臣等 俱以該掌之官 西牆外臺址 看審料理 則地勢 非不便利 而功役 極其浩大 - 中略 - 群議以爲撤內班院 以其地 東向安正殿 繚以長廊一半 仍爲內班院宣傳官廳 以其餘爲司諷司鑰房 差備門移設於溝上橋邊池西築墻 以隔內外 使雜人 不得近於今差備門 則大內體貌 始爲嚴邃 而功役不至重大云 作圖觀之 此論 殊爲近理 敢以圖形 仰稟睿裁.”

59) 『宣祖實錄』卷 200 39年 6月 甲寅條 “宮闕今將營建 必須相視舊基然後所入材料 可以知數磨鍊 擇空日都監堂上郎廳 率掖庭事知人及畫員木手 畫出圖形應造間架 稟定施行 宜當雖爲圖形之後 亦必有出入之時 續續啓請.”

60) 『光海君日記』卷 114 9年 4月 庚申條 “都提調以下與中使施文用性智及諸述官 會同詳文 外正殿視事殿寢殿別堂夜對廳等處造成形止 一一詳議 圖畫以入.”

으로 그려 이를 가지고 어디로 옮겨 공사할 것인지 논의하도록 하였다⁶¹⁾. 숙종 2년(1676년) 南別殿을 증건할 때에는 도형을 그려 間架의 많고 적음은 물론 地勢에 관해서도 일일이 살펴본 후 남별전의 설계안을 결정하였다⁶²⁾. 숙종 3년(1677년)의 남별전 증건 때에는 典祀廳 이하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도 도형을 이용하여 필요한 행각과 庭除의 크기, 문과 길의 설치에 관해 그 크기와 규모를 여러 가지로 산정해 보았다⁶³⁾.

실제 상지와 계획과정을 보면 건축물의 배치를 비롯하여 바닥포장, 담 및 문의 조성은 先王代에 있었던 前例나 예전적 圖說을 중심으로 이미 많은 부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 및 담의 間數책정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間數는 공사의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를 위하여 도형이나 도설이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이 큰 특징이다.

2) 공사

공사의 수행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법전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전에 명시된 공사절차는 주로 옥외공간 중에서 담, 바닥포장, 연못, 우물 등의 조성에 많이 치중되어 있으며, 장원서에서 담당하던 果園의 수목재배에 관한 절차 외의 다른 원유의 植木(식재시공) 과정에 관해서는 법전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경모궁의 영선기록을 보면 식목을 포함한 실제 공사의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경모궁의 경우에는 도감이 설치되어 영선을 수행할 때 건축물과 바닥포장, 담의 수축, 우물의 조성 등이 이루어졌다. 정조 즉위년(1776년) 5월에 御齋室 공사를 시작으로 齋室, 正堂, 日瞻門, 담의 수축공사를 하여 9월에 개건을 마치고 도감을 철폐하였다⁶⁴⁾. 특히 경모궁의 담을 쌓는 공역은 삼군영에서 직접 맡아 하였는데, 築牆都廳을 따로 두고 금위영 천총(정 3품 무관직)을 도감 내에 두어 공사를 수행하였다. 경모궁 담의 수축을 위해 築牆都廳을 따로 둔 것은 정조 조에는 이미 궁궐 담의 수축을 삼군영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에 비추어 경모궁의 담도 삼군영이 직접 맡아 하였던 것이다⁶⁵⁾. 도감이 철폐된 후 같은 해 10월 의궤도감을 설치하여 이듬해인 1777년 2월에 어람용 1건을 비롯하여 총 5건의 의궤를 작성하였다.

1776년의 영선은 주요 건물을 중심으로 한 공사였기 때문에 이후 우물, 담, 문, 연못 등의 수축공사가 계속되었다. 1776년 10월에 祭井을 파기 위한 擇日이 있었다⁶⁶⁾. 정조 2년(1778년)에는 경모궁의 主脈에 해당되는 館峴에 길을 내었는데, 이에 따라 主脈이 훼손된 곳에 補土를 하고 磚을 깔았다⁶⁷⁾. 정조 4년(1780년)에 경모궁 外牆과 유침문, 유근문의 수축공사를 수행하여 경모궁의 내외 담의 둘레가 총 340間으로 內牆만 그 둘레가 93間에 이르렀다⁶⁸⁾. 정조 6년(1782년)에는 경모궁 담 북쪽에 연못을 조성하였으며, 왕의 거동 때 필요한 3개의 교량이 축조되었다⁶⁹⁾.

식목과정은 도감과는 별도로 준천사의 도청

61) 『光海君日記』 卷 127 10年 閏 4月 壬午條 “傳曰 繕工監間數 詳細圖畫入啓後 移役處更議定奪事言于都監.”

62) 『承政院日記』 第 256冊 肅宗 2年 8月 庚午條 “始壽 仍殿南別殿重建圖形 將有所達 上曰 特而進前 始壽 奉圖而進 間架之多少 地勢之便否 一一陳達 上曰 如所陳重建則好矣.”

63) 『承政院日記』 第 260冊 肅宗 3年 5月 辛巳條 “安香廳典祀廳以下諸室 前已圖形入納矣 及其 造成之時 更爲審察 則緊用之行閣 惑有不爲磨者 庭除廣狹 設門道路 惑有不便之處 不得已略 爲加減進退 與前入圖形 差殊之意 敢稟.”

64) 『景慕宮儀軌』 卷 4 今制 改建擇日.

65) 『正祖實錄』 卷 28 13年 12月 乙卯條.

66) 『景慕宮改建都監儀軌』 甘結 丙申 10月 17日 “景慕宮 祭井開鑿擇日次 擇日官員 明日早食後 定送.”

67) 『景慕宮儀軌』 卷 4 今制 主脈鋪石說 “館峴爲本宮主脈 峴斷爲路 戊戌三月 御將具善復奉命看審 主脈破傷補土鋪磚”.

68) 『景慕宮儀軌』 卷 4 今制 內外牆垣說.

69) 『景慕宮儀軌』 卷 1 圖說 宮池圖說 “池在宮牆北 東西長五十二步 南北廣二十八步 中有小島 壬寅春鑿 - 中略 - 訓將具善復奉命疏鑿”, 卷 4 今制 宮路橋梁.

과 삼군영이 중심이 되어 몇 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경모궁의 건물을 위주로 한 영선은 1776년 4월에 시작하여 9월에 끝나쳤고, 이때 이루어진 경모궁 내외의 식목은 주로 경모궁 내와 경모궁 밖 오른쪽 산록에 한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迺觀門, 迺瞻門, 外牆의 수축공사가 있었던 1780년과 경모궁 내 蓮池를 팠던 1782년에 경모궁 바깥 산록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식목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景慕宮儀軌』(1783년 추정)에 나타난 식목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모궁 내외의 대대적인 식목은 영조 40년(1764년) 수은묘를 이건할 때와 정조 즉위년(1776년) 영선을 통하여 경모궁으로 격상시킬 때, 그리고 1777년, 1780년, 1782년에 각각 이루어졌다(〈표2〉 참조). 경모궁의 식목은 그 구역을 경모궁 내와 바깥 오른쪽 산록, 경모궁의 안산, 함춘원, 유근문 밖으로 나누어 삼군영이 맡아 시공을 하였다.

〈표2〉 경모궁 내외 植木

지역	식목시기	식목수(株)	담당 軍營
경모궁 내	1764년, 1776년 1777년	1076주 1220주	훈련도감
경모궁 밖 右麓	1776년 1782년	591주 2617주	훈련도감, 금위영
경모궁 밖 案山	1782년	9738주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함춘원	1780년	2014주	훈련도감, 어영청
유근문 밖	1782년	1286주	어영청

〈출처: 『景慕宮儀軌』 卷4 今制 植木說〉

원유의 영선에 있어서 공사의 수행은 법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실제 그 과정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바닥포장, 계단

의 조성, 담의 수축, 우물 및 연못의 조성과 식목이 분리되어 수행되었던 것이 주목된다. 식목을 분리하여 준천사와 삼군영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 것은 18세기에 들어와 설치된 준천사의 기능 중 하천 변 보호를 위한 식목 기능이 있었으며, 조직의 체제상 삼군영의 군사를 동원하기 쉬어 공사수행능력에 있어서 뛰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⁷⁰⁾.

3) 관리

관리에 있어서는 법전에 명시된 것과 같이 선공감을 중심으로 한 점검과 개보수공사와 봉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공사과정과 마찬가지로 주로 담, 바닥포장, 연못 등의 옥외공간에 해당되었고, 수목의 관리는 분리되어 이루어졌다. 경모궁의 예를 보면 수목 관리는 동산직이라는 전문기술자를 두어 따로 관리하였다. 1776년에 있었던 경모궁 공사 끝난 직후인 1777년 3월에 朴鳳尙이라는 사람을 동산직으로 정하여 경모궁 내외의 수목관리를 맡겼다⁷¹⁾. 훼손된 지역에 대한 식목은 일년에 두 번 봄·가을에 경모궁 내외 식목을 준천사 도청이 주관하여 거행하였으며, 그 과정을 宮司(궁의 관원)가 입회하여 자세히 살폈다⁷²⁾.

특히 수목의 관리에 있어서 궁궐이나 단묘의 위엄을 살리기 위한 수림의 보호도 중요하였지만, 조선시대에는 果園 뿐 아니라 궁궐이나 단묘의 원유에서도 수확되는 과일의 양이 중요하였다. 필요한 과일의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훼손된 지역에는 다시 식목을 하였고 식목안을 따로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과일수확에서 진상 절차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규정을 만들었다⁷³⁾.

70) 이러한 기능의 분담은 능원의 경우에 더욱 잘 나타나고 있는데, 식목의 주관은 주로 삼군영이 맡아 하였고, 曲牆·石物·莎草를 개수하는 일은 선공감이 맡고 있었다(『英祖實錄』 卷 112 45年 2月 甲寅條, 『純祖實錄』 卷 15 12年 4月 乙卯條, 『哲宗實錄』 卷 9 8年 2月 庚戌條).

71) 『景慕宮儀軌』 卷 4 今制 植木說 “丁酉三月定 東山直 (朴鳳尙).”

72) 『景慕宮儀軌』 卷 4 今制 植木說 “每春秋種木時 使濬川司都廳監董 而宮司檢飭 既種後守僕員役東山直看檢守護 (生枯數文詳在本宮植木案).” 『植木節目』 “每年春秋 宮內外植木 都廳主管舉行 宮司亦爲眼同看檢爲白齊.”

73) 『景慕宮儀軌』 卷 4 今制 植木說 “既種後守僕員役東山直看檢守護 (生枯數文詳在本宮植木案).” 경모궁의 경우에는 『植木節目』(1782년)을 작성하여 수목의 관리와 감독 및 과일을 수확할 때의 규정, 식목 후 말라죽은 나무를 관리하는 규정 등을 세세히 적고 있다.

IV. 결론

조선 후기 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궁궐의 원유, 壇廟의 원유, 果園 등에 대한 영선은 왕실의 정통성과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며, 왕실 및 주요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과물을 수확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원유의 영선은 행정제도 속에서 체계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이루어졌다. 영선의 주체가 되는 관련 행정기구와 이를 운영하였던 사람들이 영선과정의 각 단계별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이들이 맞물려 원유에 대한 영선과정을 구성하였다.

조선 후기 원유의 영선과정은 현대와 같이 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 관리의 단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기획과 계획 및 설계단계를 포함하는 상지와 기획과정을 거쳐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전문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지와 기획과정에서는 왕과 해당관료가 의논하여 부지선정과 부지분석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해당관료와 호조의 計士, 예조의 畫員 등이 현장에 파견되어 공사규모산정을 하여 도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경영계획과 설계안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공사에 착수하게 될 때에는 궁궐의 영선과 같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임시직제인 도감을 설치하고 주로 호조의 관료가 책임자로 파견되었다. 그밖에 일반적인 개보수 공사일 경우에는 공조의 선공감을 중심으로 공사가 수행되었다. 공사의 수행에는 많은 군사들과 工匠을 비롯하여 畫員들이 동원되었으며 監役官이 현장을 통솔하였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다른 옥외공간과는 그 성격이 다른 植木은 도감이나 선공감의 공사수행과 분리되어 실시되었다. 식목과정은 하천변 보호를 위한 산림보호와 훼손된 지역의 식목을 담당하고 있던 준천사와 삼군영이 중심이 되어 몇 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도감이 설치되었던 경우나 일반적 개보수 공사가 시행된 후의 관리는 대상별로 이루어졌

다. 선공감의 구역별 점검과 奉審을 통한 점검 중에 보수나 개조해야 할 곳이 발견되면 해당 관리가 왕에게 보고한 후 개수할 날짜를 택하고 이에 따라 해당되는 행정기구의 관료와 선공감의 監役官이 현장을 살핀 후 영선과정 전체를 다시 밟게 된다. 이 때 수목의 관리는 특별히 전문기술자를 두어 따로 시행하였다. 궁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던 果園 등은 장원서 소속의 東山別監이 담당하였고, 그 밖의 과물을 수확할 수 있는 원유에는 東山直을 두어 수목의 재배와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의 영선체제와 수행과정을 고찰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영선과정 속에서 조경부분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영선과정은 토목, 건축, 조경이 구분되지 않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연계한 종합적인 고찰과 인접학문과의 교류를 통한 연구가 계속 있어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 『經國大典』(1485), 『조선왕조법전집』 권1, 부산: 민족문화(1989, 영인본), 한우근 외 4인 역주 (1995), 『역주 경국대전 - 번역, 주석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景慕宮改建都監儀軌』(1776), 규장각소장 필사본.
- 『景慕宮儀軌』(1783), 서울대 규장각소장(1996, 영인본)
- 『大典會通』(1865), 『조선왕조법전집』 권 4, 부산: 민족문화(1989, 영인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역주(1975), 『국역 대전회통』,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 『東國輿地備考』(1863-1907), 『조선시대 사찬음지』 권 1, 서울: 한국인문과학원(1989, 영인본)
- 『說文解字注』, 許慎 撰(漢), 段玉裁 注(清),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 『續大典』(1744), 규장각소장 목판본.
- 『承政院日記』
- 『植木節目』(1782), 규장각소장 필사본.
- 『新增東國輿地勝覽』(1531), 민족문화추진회 역(1971), 『국역 新增東國輿地勝覽』, 서울: 민문고.
- 『類苑叢寶』, 규장각소장 목판본.
- 『六典條例』(1867), 서울: 경문사(1997, 영인본), 법제처 역주(1973), 『육전조례』, 서울: 법제처.
- 『掌苑署臚錄』(1794), 규장각소장 필사본.
- 『朝鮮王朝實錄』

15. 『增補文獻備考』(1770-190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 (1995), 『국역증보문헌비고』,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6. 『漢京識略』(1830), 『조선시대 사찬읍지』 권1, 서울: 한국인문과학원(1989, 영인본), 권태익 역 (1981), 『漢京識略』, 서울: 탐구당.
17. 김동욱(1983), "조선시대 조영조직연구 1 - 3", 『건축』 27(112, 113, 115).
18. _____(1984), "조선 후기 건축공사에 있어서의 목재 공급 체계 - 수원공사 중심으로", 『건축』 117.
19. _____(1986), "인조조의 창경궁·창덕궁 조영", 『문화재』 1.
20. _____(1988), "한국건축 생산조직의 변천에 관한 연구", 와세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 _____(1988), "조선시대 宗廟正殿 및 永寧殿의 건물 규모의 변천", 『문화재』 21.
22. _____(1992), "17세기의 창덕궁 내전 조영", 『임진왜란 이후의 조영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총서 2.
23. _____(1996.11), "조선 정조조의 창덕궁 건물구성의 변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11).
24. 김룡국(1984), "경운궁의 영건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5. 김왕직(1987), "조선 후기 궁궐건축의 營造에 관한 연구 - 19세기 초 서궐, 창경궁, 창덕궁 영건도감의케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공학석사학위논문.
26. 김운태(1995), 『조선왕조 정치·행정사』, 서울: 박영사.
27. 서울대학교 도서관(1993),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8. 양윤식(1989), "화성영건에 관한 연구 - 화성성역의 케에 나타난 건축생산 체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9. 오승봉(1994), "조선시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윤장섭(1975), "한국의 영조척도", 『건축』 19(63).
31. 이병수 외 5인(1972), 『한국학백과사전』 권 1, 서울: 을유문화사.
32. 이왕기(1979), "조선왕조 건축의 營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33. 이유직(1992.7), "조선시대 조경제도의 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2).
34. 장동수(1994), "한국 전통도시조경의 장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5. 전영옥, 양병이(1997.1), "조선시대 조경행정기구로서 장원서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4(4).
36. _____(1997.7), "조선시대 조경공사의 제도적 측면에 관한 연구 - 선공감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5(2).
37. 차문섭(1995), 『조선시대군제연구』, 서울: 단대출판부.
38. 彭一剛(1989), 『중국 고대 정원림의 분석』, 김종태 역, 서울: 문화재관리국.
39. 한우근 외 4인(1995), 『역주 경국대전 - 주석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0. 한제수(1991.2), "조선시대 營造기록의 고전적 가치와 건축사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학 논집』 19.
41. 한충희(1983), "조선초기 六曹屬衙門의 행정체계에 대하여", 『한국학 논집』 10.
42. 황기원(1995), "『園治·相地論』 연구(1)", 『환경논총』 33.